

제42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쳐

일 시 2024년12월19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3)
-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8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8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8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8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8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8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8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3)	8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8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8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8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8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9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9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9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9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9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9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9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9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9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9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9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9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9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9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9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9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9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9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9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9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9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9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9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9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9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9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9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9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9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9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9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9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9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9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9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9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9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10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10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10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10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10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10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10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10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1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10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10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10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10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10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10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10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10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1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10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10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10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10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10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1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10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10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10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10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10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10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10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10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10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10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10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10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10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10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10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1)	1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11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11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11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11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11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11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11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1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11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11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1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11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11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11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1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11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11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11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11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11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11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11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11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11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11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11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11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11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1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11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11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1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11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1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1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1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2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2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12

(14시) 14분 개의)

○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주 내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보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친 후 일괄해서 의결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3)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1 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3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님께서 계속하여 출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법안 심사를 위해 계속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챙점 보고가 필요할까요?

○**위성곤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필요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혹시 하실 분,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자체와 자율 결정하는 것이 원래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원래대로 일몰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소방이 대폭 증원됐고 또 신종 재난, 신종 화재가 발생되면서 소방장비에 대한 보강의 필요성 또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에 낸 의견에 약간 변경을 줘서 1년 내지 2년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방 수요에 대한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소방청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소방청 말씀 주세요.

○**소방청기획조정관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배덕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1년 동안 일몰을 연장하고 소방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결정이 됐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TF를 구성해서 그런 재원 확충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TF 운영해 봤지만 별다른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확실한 가능성은 가지고 일몰을 연장하기보다는 일단은 법제화를 통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추후에 함께 노력을 해서 재원이 확충되면 그 확충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방안을 논의하는 게 저

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동사안은 저희가 며칠째 계속 법안소위에서 의논을 해 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고요,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까.

○ 위성곤 위원 저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이후에 특별하게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안정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이달희 위원님.

○ 이달희 위원 저는 지금 법제화 필요성으로 법을 냈습니다. 법을 냈는데, 지방정부에도 근무해 보고 하니까 제 안은 탄력적으로, 법제화하되 지방에서 지금 75%로 되어 있는 것을 형편, 장비 구입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15% 또 유독 불이 많이 나고 그런 해가 유난히 있거든요. 그 이후는 90% 가까이 되게 75%, ±15% 이 탄력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법제화를 추진하되 그 법제화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지요, 이달희 위원님?

○ 이달희 위원 예.

○ 소위원장 윤건영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님.

○ 조승환 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사실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제화를 시켜 놨을 때 상황 변동이 생겼을 때 사실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예를 들면 교육교부세 같은 경우에 내국세의 일정 비율 자체를 해 놓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과잉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과 두 번째로는 지금 소방의 구조가 전연 체계적이지 못하다. 어제 제가 간담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단순 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방에 대한 어떤 지휘 계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원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몰 연장의 부분은 시행령 부칙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닌 거고, 법률을 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일단 시행령에서 일몰 연장을 해 두고 정말 제대로 된 소방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서…… 이건 일몰하고 상관없이 논의할 수 있는,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일몰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제 일차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탄력을이 15%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시행령에 소방하고

안전 부분을 75 대 25로 해 놓고 있는 그 부분을 15% 가감을 하도록 자율성을 주자 하는데, 15%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듭니다마는 그래도 꼭 이 자리에서 바로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그런 형태의 어떤 탄력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차적인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저도 이달희 위원님이나 조승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행안부 차관님의 입장도 다시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시행령에 있는 일몰 기한을 연장을 하고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가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단의 전제가 논의가 안 된 상태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만 하다 보니까 앞단에 대한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힘을 모아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법제화가 된다면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행안부 입장에서는 재원을 더 늘리기 위해 굳이 기재부랑 그렇게 크게 다툴 유인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장기적으로 보면 들고, 시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더라도 결국은 지자체에서 전출하는 금액을 굳이 그렇게까지 계속 늘려야 되느냐 하는 그쪽 유인도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길게 보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배준영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배준영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지금 네 분 정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 법은 제일 쟁점이 되는 법이니까 위원님들 다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저는 법률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부대의견으로 재원 확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방직들의 어려움과 또 계속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여전하고요.

특히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다른 재난 부분들도 있지만 소방 쪽에서 일어나는 재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재원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주실 분 없으십니까?

한병도 위원님.

○**한병도 위원**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소방에 대한 꾸준한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공감 100%, 누구나 여야 다 같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방의 국가직화가 돼 왔는데 그 예산은 중앙과 지방 1 대 9로 지방직화되어 있다는 게, 또 이 엄연한 현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예산적인 구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수 감소 위기를 감안할 때 사실 배분비율 조정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법률로써 조정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을 하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몰 도래 때마다 또 검토하고 종합적 검토하고 또 약속하고 검토하고 이게 계속 연기가 돼 왔고 앞으로도 그전의 패턴을 보면 또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고요. 특히 저는 6만 소방 가족들에게 우리가 자꾸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마음까지 듭니다.

또 이번 토론을 하면서 시도지사의 권한 침해 우려에 대한 논의도 저희들이 많이, 논란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지자체장의 정책 방향에 따른 불안정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법제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저는 또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소방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최종 결론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고민과 이런 것들도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양쪽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는 지금은 그런 변환이 필요할 때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저도 행안부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 소방청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일몰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 종식을 위해서 법제화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요.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않습니다만 다수 의견이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법제화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인 것 같고. 다만 이달희 위원님께서는 법제화하되 15%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허용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의견이 세 가지지요. 조 위원님께서는 이건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보자. 배준영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일몰 연장을 하고 시간을 보자라고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불확실성을 해소하자. 법제화하자’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고. 거기에 보태서 이달희 위원님은 15% 가감 조정 허용하자라는 걸 더 내용에 담자라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체회의에서 또 의논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법안1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로 정리를 했으면 하고요.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 범위 가감 조정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행안부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현행 유지한 내용 속에서 법제화 정도가 가장 크게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계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제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을 법제화시킨다. 다만 이달희 의원님 부분은 조금, 15% 범위 가감 부분은 부칙……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지금 법제화를 소위는 결정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 15%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이라는 걸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어떤 일정 재량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달희 의원님의 안에 대해 정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희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북의 부지사로 있으면서 불이 많이 나는 해가 있고 또 소방은 도대체 저 많은 인원들이 매일 놀면서 뭐 하나 할 정도로 또 불이 안 나는 그런, 불도 그렇고 재난도 그렇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때인데……

그러면 이제 재원 투여 부분인데 이럴 때에는 지역의 단체장들이 또 작년에 불이 많이 나고 하면 그 이듬해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90까지 쓰고도 모자라서, 우리 경북은 그동안 불이 많이 나서 도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장비를 구축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이것은 현장에서 경험치를 법에 담았거든요. 60도 적은 수도 아니고 또 그 이듬해 많은 재난이 나거나 불이 나거나 해서 필요할 때에는 90을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야당의 위원님들께서 탄력적으로 좀 한번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제화하는 것은 이게 꼭 매년 일몰 문제 때문에 모든 소방 식구들이 문자 보내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부분을 해마다 거듭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역에 그걸 좀 줘라, 이것 전부 다 지역에 다 줘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함께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 법을 좀 받아 주시면 감개무량하고 또 현장의 소리도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말씀 주실 것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제가 전부 주라는 것은 깎는 것 생색 내지 말자는 거고 이것은 사실은 국가가 교부하는 교부세를 어떻게 나눠 주는가의 문제이니까 현재까지는 저는 뭐……

소방의 노후화율이 약 10%라고 하는데 적정 노후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소방청기획조정관 배덕곤**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적정 노후화율은 10% 내외로 관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노후화율에 너무 매몰돼 있는데 결국은 소방 장구 보유율이나 품질 이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재원의 안정적인 투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늘의 결정이 향후에 관련되어서 행안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면 정책 변경을 요청하면 다시 법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현행대로 법정

률화시키는 게 지금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방세 관련되어서 조세특례법 등 감면세액 총액과 관련되어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소위원장 윤건영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사실 장비를 최신화하고 최고화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해서 또 소방관들한테 문자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같이 근무했었던 해경 부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어떤 장비를 어떻게 차고 들어가느냐가 사실 굉장히 천차만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정책 판단의 문제고 장비를 과거에 우리가 정말 소방 장갑을 사비로 사서 쓰고.

지금 사실 군에서도 요새 장교들 사제 물품들 쓰고 있다라는 게 납품되는 장비가 안 좋아 가지고서 하사관들 자기 돈 주고 야간 TOD 같은 것 구입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장비의 현대화·노후화 이런 부분만 너무 맹목적으로 갔을 때 지금 또 타 재원들이 아까 담배 개소세 같은 경우에 어떤 확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소방 부분만 너무 앞서 나가는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교육교부금 가지고서 심지어 이건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입학하는 중고등학생들 교복까지, 어려운 계층에 주는 것까지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나눠 주고 하는 이런 현상 그다음에 노트북을 하나씩 다 사서 주고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 배분의 효율성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을 필요시에는 또 바꿀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들어가 있는 투입 재원을 빼내는 것은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좀 어떤 탄력성 부분이나 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의 부분은 저는 꼭 좀 필요하다. 그래서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법제화라는 의견이시라면 그런 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법령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위원장님, 제가 노후율 관련해서 아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23년 말 기준으로 할 때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은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소방 차량 같은 경우에는 9.1% 그다음에 구조 장비는 1.6%, 구급 장비는 보유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10%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노후율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저도……

○소위원장 윤건영 예,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다들 말씀 겹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런 거지요. 교육이 그렇고 소방이 그렇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배운 학생들이나 교사들도 그렇고 소방관이라는 것도 무슨 자기들이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나면 가서 꺼야 되는 사람이니까, 행정적인 권리가 없으니까 뭔가를 주장할 때 항상 힘들거든요.

저는 조승환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 예산이 요즘 많이 남아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알고 있는데 저걸 우리가 지방세의 22%를 안 잡아 놨으면 진작에 대학에 다 뺏겼을 거예요. 이미 지금도 이렇게 털어 가자, 저렇게 털어 가자라고 매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법에 있으니까 지켜지고 그걸 낭비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지난 20년 동안 잘 지켜서 우리가 학생들을 잘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소방도 마찬가지로 재난본부장님 어제부터 계속 소방이랑 친구라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병장 때 이등병한테 친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등병 입장에서는 친구가 아닙니다.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이게 그런 대등한 토론이 됐으면 그 TF에서 뭔가 결론이 나와서 올여름에라도 2년 동안 논의해 봤더니 이런 정도로 하면 적절하겠습니다라고 두 분이 합의해 갖고 오시면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법제화까지 간다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교육, 소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법으로라도 만들고 지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오늘 갈 길이 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 충분히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남아 있는 안건이 한 15건 정도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들 말씀을 충실히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교부세법에 소방안전교부세는 네 가지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 인력,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법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75% 이상 예를 들어서 표현이 된다면 사실 세 번째, 네 번째에 있었던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정의 부분하고 사실은 좀 충족을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제화한다라는 걸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고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해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법문을 놓고 의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법제화한다라는 걸로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부분이거든요.

순서를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부분인데 수석께서 몇 권의 몇 페이지다라는 걸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권의 88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동 법안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나눴고 정부 측 의견도 다 들어 본 것 같고요. 위원님들 의견……

지금 정부 측은 신중검토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냥 정부안으로 가시지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정부안으로 가겠습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2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92페이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발전방식별 차등세율 도입인데요. 제가 발의한 법인데 그냥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정부안으로 가겠습니다, 간명하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이달희 위원 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되겠지요? 혹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두 번째 보류법안 심사자료 2권의 11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다자녀를 2자녀 이상으로 해 가지고 3자녀 이상과 차별적으로 둘 거냐 아니면 지금 현행을 유지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주시지요.

○이달희 위원 두 명을 다자녀로 인정해 줍시다, 정부안으로.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신가요?

이게 하이브리드하고 연결돼 있었던 거고요, 재원으로 보면. 그리고 이게 실제 정책의 효과가 크냐라는 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안대로 하는 데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갑니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행정안전부가 나중에라도 보고하실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없지. 어떻게 보고해?

○김성희 위원 아니,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여쭈어봤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감면, 여러 가지 실적들은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성곤 위원 아니, 실적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정책이 있는 건데…… 설문조사 하실 거예요?

○**김성희 위원** 아니, 깎아 줬다는 나오겠지만 그게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차관님, 이것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효과 있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사실 국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부터.

○**박정현 위원** 현재 있는 두 명의 자녀들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게 출생률로 올라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달희 위원** 하나 더 넣을까 고민할 때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정부안으로 가시지요.

○**양부남 위원** 이 법 시행 이후 출산율을 한번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분모를 공무원으로 해서.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동 안건은 정부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번.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페이지, 목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 29번이 나오는데요. 주택 관련된 게 6건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신 후에 페이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먼저 29번에 있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 30번의 비수도권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의 57인데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의 국토 및 지역개발 지원, 70번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었고 그 밑의 72번의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례로 취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연번 79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 부채 상환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6건 중에서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비아파트, 빌라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6건의 안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발표돼 있는, 서로 연결돼 있는 것도 있고 별도인 것도 있습니다. 1건, 1건씩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거는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안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승환 위원** 일단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큰 그게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라서 반복은 안 하겠고요.

어쨌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인데 시행을 못 해 봄에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은 하시는 걸로 하는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업체들만, 즉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우는 기업들만 젖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하시니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지 하는 과정을 지금 12월이니까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 의원실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혼자 막아서 정부 정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니겠지만 최소한 감시는 해야겠으니까요. 분기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저도 똑같이 6건에 대해서 지난 회의 때까지 부정적 의견을 했는데 의견을 달리해서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견의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수없는 경제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 정부안에서 혜택을 주고 싶은 경제주체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경제주체들도 있습니다. 어느 주체라고 제가 명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경제주체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수없는 정책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부 반대하면서 왜 굳이 이러한 경제주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유감스러움이 있고.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주체 중에서 이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경제주체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대로 하는데요. 저도 방금 김성희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부가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간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짚어 보셨으면 좋겠고.

매각·임대를 위한 소형주택의 취득세 25% 감면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면 정부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자꾸 먼저 말씀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항상 어느 정부에서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특히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계속해 오던 거고 그 일환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가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앞서 소위에서 우리가 며칠째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말씀도 있고 앞서 양부남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 제공 시 취득세 25% 감면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으면 이것도 정부 의견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제 제기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짚어 주셔도 됩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주택 관련해서 124페이지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같은 방식으로 여쭙겠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정부안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그런데 정부 측에서 동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이고요. 저희가 국토부 국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류가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계류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계류.

○**조승환 위원** 계류시키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맞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다 해 주면서 이것만 안 해 주면 그것도 일관성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원님 안이어서 검토가 조금 충분치 않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서 그래요.

○**위성곤 위원** 같은 내용인데 정부가 발표 안 했다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건 사실 혼을 내야 될 일이지요, 위원님.

○**조승환 위원** 일관성이 안 맞지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먼저 했어요.

○**위성곤 위원** 정책이 일관성 있게끔 얘기를 해야지요, 부처가 답변할 때.

그런데 일몰기한 연장이 사실상 지금은 현행대로 되고 있어요. 거기는 사업이 좀 늘어났네요.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은 정부 의견대로 일단 계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 주실 분 계시면 말씀 주세요.

○**김성희 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게 조정대상지역 외라고 해 놓으면 사실 수도권 포함해서 다 되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윤건영** 저도 보태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재건축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그리고 다음 바로 이어서 이야기할 LH공사의 기업 부채 상환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 2건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2건만큼은 좀 깊은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위원님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부남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토부 담당 국장 의견을……

○**소위원장 윤건영** 예,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주택정책관 김현정입니다.

동 사항은 규제지역 외에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금액 제한……

○**소위원장 윤건영** 잠깐만, 국장님 나눠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두 가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현정** 첫번째, 재건축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규제지역 외의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분양가격 제한도 같이 가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한 440군데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규제지역이 한 90군데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절반 정도가 수도권이고 나머지 절반이 주로 광역시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의 공사비나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또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분들이 거의 원조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재정착률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책의 긍정성을 설명한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게 조합원 대상하고 사업시행자 대상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감면의 효과가 어디에 귀속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에서 원조합자가 있잖아요. 조합을 구성한 자가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공공기여분 빼고 난 뒤의 분양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감면 대상자에 사업시행자가 들어갔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현정** 그거는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재개발에서 상가나 주택의 소유자가 원조합원인 경우고요. 그 조합원들이 모여서,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이 됩니다. 일부 현물 청산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안 살고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나는 일찍 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토지등소유자의 집합체인 조합에서 현물 청산한 물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귀속자는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조합은 현물 청산자들 일부분에 대한, 개별 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이 됩니다만 결국 귀속되는 부분은 조합원이 될 거고요.

저희가 조례로 40%로 정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시도마다 재건축조합에 대한 공공기여분을 가져오는 그 포션이다 다릅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 상황도 부동산 자체가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성이 시도별로 다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공기여를 받는 수준에 대비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이 합당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재건축해 가지고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신규 취득할 때 취득세 감경 조항이 주 포인트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 외에는 어떤 부수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결국 원조합원 또는 분양받는 사람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자 이거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현정** 일반분양 받는 사람은 아니고요.

○**조승환 위원** 원조합원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현정** 원래 있던 조합원 중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빼고 원래 조합 구성해 가지고서 거기 있었던 그분들 취득세는 감경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십니까? 사업시행자 부분은 빼고……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금 일단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개발과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재개발은 오래전부터 혜택을 줘 왔고 재건축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정 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혜택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로또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은 게 재건축사업인데 거기의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에게 감면을 주는

데, 그것도 조례를 통해서 감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

저는 오히려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감면할 수 있게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취득세 감면해도 사업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에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일 텐데,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뺀 지역 전체일 텐데 거기서 사업이 일어나는데 거기다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완전히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국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답변을……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현정** 참고로 1세대 1주택자 비율을 저희가 봤는데 한 60% 정도가 1세대 1주택자로, 저희가 샘플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타나고요. 분양가격 12억 이하는 한 10%가량 정도가 빠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2개의 법안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도 했고 하니까 차관님,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런데 재건축하고 소규모 재개발사업,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사실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장님께서 오셔서 어떤 한 지역을 시뮬레이션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취득세 감면 효과보다 공공기여가 여러 가지 대비해 보니까 좀 더 크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 법안 다시 심사할 때는 국토부에서도 여러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와서 진짜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교육체험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도 여러 차례 논의했던 건데요.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해서 이게 유상으로 하고 있고 꽤 고가의 비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주는 게 맞냐라는 반대와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하고 있다라는 찬성론이 있습니다.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단 계류해서 산림청의 의견을 좀 듣고 법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다른 의견……

○**조승환 위원** 계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계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에 친환경산업에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은 친환경산업의 기반 자체가 많이 와해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관련 업종이 광범위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친환경 산업을 추가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정부안을 받자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니, 의원님 안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권향엽 의원안도 있고 정부안도 있습니다, 이것.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정부안은 자구 정리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관련 업종을 받아 봤는데요. 분류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의원님께서 친환경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분류표를 만든 것과 그다음에 우리 산업분류표에 따른 분류표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분류표대로 하면 산업분류표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산업분류표 안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전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알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길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법제적으로 봤을 때 본문 단서의 부분, 이게 제가 아무리 읽어도 그 부분은 본문 단서에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감면액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타 분야에서도 자산총액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체계적으로 예외적이라는 측면이고요.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필요하겠지만, 대형 항공사는 중소형 항공사랑 경쟁하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 항공사랑 경쟁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3년의 일몰주기를 두고 3년 후에 다시 논의하면서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 감면율을 낮추게 되면 또는 감면하지 않게 되면 바로 그것은 비교의 형평성으로 해서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2조의2에서 여덟 가지 원칙을 다뤘을 때 납세의무자가 부담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는 여덟 가지 원칙 중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일곱 가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정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부분은 어제 저희가 간담회에서 행안부는 별도 조항을 2년으로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이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오히려 조문의 문제라면 2년으로 줄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래서 본 조문하고 별도 조항을 좀 시차를 두자, 3년·2년으로 두자라는 아이디어를 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릴게요.

○**한병도 위원** 이것은 제가 빌의를 해 가지고요, 어제 충분히 토론을 했고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번에는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3년 일몰하는 형태로 좀 논의를 좁혀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조승환 위원** 저도 2년 의견을 드렸는데 어제 그것은 단순히 법체계상으로 이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2년이라고 드렸는데, 지금 저도 이것을 죽 들여다보니까 항공기 취득 일이라는 게 사실 항공기 등록하는 날짜인데 이게 계약기간부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히 법체계만으로 이것을 2년으로 줄일 것은 아니고 그냥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석전문위원님이 좀 양보하시고 그렇게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만약에 하시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이 맞습니다. 이것을 법체계 때문에 2년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 주려면 3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법의 취지라든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를 봐서 정부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사실 이 법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래저래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결국 한계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법인데,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예산을 가지고 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돋고 서포트하고 핵심 산업들을 육성하고 키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것 누가 여기서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꼭 남의 지방으로 갈 돈을 깎아서 정부가 생색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린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정부의 고육지책도 알겠습니다. 이것을 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토교통부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이러나저러나 지방세를 다시 걷어야 되기 때문에 조항을 남겨 뒀다가 나중에 다시 권리를 찾아오겠다라는 행정안전부의 결의도 있으신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혹은 간담회에서 나눴던 이야기대로 3년 후에 결기 있게 잘 집행되는지를—그때까지는 아직 임기 안이니까요—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박정현 위원** 저도 사실은 김성희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항공업체, 특히 이게 대한항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원하게 그냥 정부안대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저가 항공과 대형 항공사의 구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안처럼 3년, 본문 단서 3년 하고 정부안대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화물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도 좀 논란이 됐던 겁니다. 정부 법안은 아닌데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에 취득세 부분을 감면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어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시 조금, 어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화물차를 교체하게 되면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만 대를 예상하고 있고 26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즉 지방에서 13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나중에 폐차 후에 신차로 다시 무공해차를 취득하시게 되면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조승환 위원 이것은 계류시키고 가시지요. 전기자동차로 바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혜택을 받는 거고 또 경유차를 경유차로 바꿀 때도 보조금 50을 받는 거니까 저는……

○위성곤 위원 아니요, 저……

○조승환 위원 다릅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어떤 의견인 거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법안에 대한 보류 의견인 겁니다, 신중검토.

○위성곤 위원 법안에 있어서 보류하자는 의견인데 개정안의 내용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새롭게 등록하는 화물차에 대해서 경유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지급하자 이런 제안인 거잖아요?

○조승환 위원 세액을 공제하자.

○이달희 위원 취득세 면제.

○위성곤 위원 예, 취득세 세액을 공제하자라는 것인데 원래 이 제도가 있었지요, 과거에?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2017년에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 일몰됐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2017년에 6개월 동안 하고 멈췄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결과 5등급 경유차가 보험 가입된 차량만 21만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등급 경유차가 83만 대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오염이 지금도 경유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련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LPG차가, 연간 소형차가 판매되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보면 8만 5000대 정도의 LPG차가 판매됐습니다. 전체 1t급 소형 화물차는 10만 대 중에 한 83%가 판매됐는데요. 관련되어서 앞서 얘기한 21만 3000대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는 요청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취득세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룬을 가지고 고민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 화물차라는 게 실제로 서민들한테 직결되는 정책 분야라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신설하게 되면, 과거에도 한 바가 있지만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도 안 좋고 민생이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한마디 참고삼아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09년도에도 취득세 감면이 있었고 17년도에도 취득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노후 경유차 폐차 관련해서 국세인 개소세하고 지방세인 취득세가 동시에 폐기지로 해서 발의가 됐었고요, 진행이 됐었고. 이번의 경우에도 같은 개소세 관련된 부분이 기재위에 같이 발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고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LPG차에 한정해서, 의외로 휘발유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옛날 승용 코란도 경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1t, 결국 화물트럭이 전기로 안 가고 LPG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이걸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1t 부분만.....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1t 화물차에 대해서 전기차로 가는 부분은 지금 140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LPG로 가는 부분만.

○**위성곤 위원** 전기차는 빼지고요, 이미 전기차는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LPG차만 좀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 식으로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가능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결국 노후 경유차 문제는 환경부의 의견이 또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어쨌든 보조금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세율 문제라든지 상한 문제도 저희가 사실은 여기까지 고민을 안 해 본 상태인데요. 환경부 의견이나 조금 듣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계류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조승환 위원 위임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성곤 위원 계류해서……

○이달희 위원 계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계류해서 이거는 차관님 의견을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타당한 지적 같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게 LPG 차량이에요. 전기차는 지원 나간다 하면 그 부분 제외하고 경유차 빼고 실제로 도움 되는 LPG 차량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경형자동차 문제인데요, 연번 64번 별도로 돼 있는 것.

○조승환 위원 경차, 캐스퍼.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캐스퍼.

경형자동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형자동차 승용 부분이 75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안이 4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어제도 우리 간담회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정부 측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보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75만 원으로 현재 하면서 감면했던 게 한 1098억이어서 상당히 규모가 커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40만 원으로 좀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충분히 좀 말씀을 나눠 주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이게 광주의 캐스퍼 차량이 경형자동차입니다. 광주에서는 이 캐스퍼 차량을 상생의 일자리라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팔리지 않으면 광주의 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40만 원으로 내려 버리면 차가 앞으로 더 많이 팔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해 주시고 정히 국가 재정이 어려우시다면 70만 원 정도까지 절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저는 양부남 위원님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실은 차량이 대형화되어지면서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경차 개발을 정부가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차 위주로 운영하게끔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보통 2인 이상 타지 않고 보통 1인 운전자인 경우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경차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서 산업을 이끌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봐서 충분히 양보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양부남 위원님 안에 동의하고요. 정부에서 시원하게 그냥 75만 원 유지하시지요,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 다 나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차관님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조승환 위원** 저도 말씀……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경차 정책 부분에 사실 굉장히 경차 확대 정책을 써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 경차 부분에 관해서 그냥 정부도 손을 놔 버리고…… 물론 일반인들이 너무 경차를 안 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정부도 손을 놨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차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의외로 지방세 감면 액수가 너무 많다라는, 정말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경차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후퇴한다는 이미지를 줄 필요는 저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 재정에서 지방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 세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 광주시로, 광주시에서 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상당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결국 광주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지방세수에만 큰 그게 없다 그런다면 저는 양부남 위원님 의견에 그걸 하면 좋겠다는……

○**양부남 위원** 차를 산 사람이 광주시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조승환 위원** 아, 그렇네, 그렇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어제 발표하시면서 정부에서 이게 더 이상 영세한 사람들이 안 타는 세컨 카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소형이나 대형 타는 것보다 세컨 카라도, 소형 타는 게 환경적인 거나 에너지 면에서 훨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양부남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또 광주의 여러 가지 산업의 구조상 이 차량이 많이 생산되고 많이 팔려야 된다, 팔려서 광주형 일자리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거에도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여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말씀처럼 70만 원 하지 말고 현행 있는 75만 원으로 해서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15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동산을 선택한 경우 수탁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금조달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거와, 대표적으로 담보선택이 될 텐데 담보선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간주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겠고요.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행안부에서의 의견은 이게 지금 산단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물류단지라든지 관광단지 등 다른 사업시행자, 감면 대상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실태조사 기간을 두고 2월 중까지 또는 3월 중까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그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답변이 있으셔서……

그 내용 중에 양부남 위원님께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해당이 되면 감면이 되는 것이고 해당이 안 되면 감면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우리 조사관들하고 어제저녁에 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부남 위원님 말씀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김상훈 의원님 안에 있는 조문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78조에 돼 있는 부분에 시행자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문제가 그다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또 빠질 수가 있어서 1항을 그대로 두고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되어 있고 위탁자가 사업시행자이며 수탁자가 지방세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이것이 간주취득이 되겠습니다—보는 경우에는 수탁자도 사업시행자로 본다로 규정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해결이 되고 실질과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수정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우선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개발단지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충분히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정의견에 대해서 보류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조금……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금 막 봤습니다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승환 위원 계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양부남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윤건영 양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제가 어제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아마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행안부차관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행안부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신탁의 종류가 여러 형태가 있고 신탁의 주체도 어떤 이 문제가 실질과세와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신탁의 종류와 신탁의 주체와 수탁자의 법률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때 이게 일률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어제 이런 이야기를 제시했지만 또 정부안처럼 이걸 좀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기간 문제는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어제 기간 관련해서 원래 한 석 달 정도까지 하자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석 달은 너무 벅차다, 상반기 중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물류단지 등 관광단지 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법률 조문은 산업단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확대해서 굳이 고민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 고민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들어 봤더니 은행에 저당을 잡힌 것과 신탁으로 잡힌 것 돈을 빌린 건 마찬가지인데 빌리는 방식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일단 처리를 하고 나머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문제는 그 법을 시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고민해야 할 것 아닌가요? 관련돼서 국토부가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문광부가 고민해야 될 일을 이걸 다 떠안고 행안부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우선 수석전문위원 이야기하시고.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제가 행안부하고 논의를 할 때는 행안부에서 지금 신탁 부분, 신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관리신탁이라든지 개발신탁이라든지 담보신탁이라든지.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신탁은 여기서는 담보신탁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예외는 굉장히 드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 예외가 있으니 그래도 신탁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저도 의견에 동의를 해서 그 정도 실태 파악이라고 하면 3개월이면 충분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거를 3개월 내에 못 하겠다고 해서 6월 중 상반기로 되게 되면, 국회 일정이 상반기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정기국회에 심의하게 되는데 그러면 1월 1일 자로 이 문제 제기를 한 분들에 대한 입법부의 반응이 1년이 걸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소급해야 될 가능성성이 굉장히 높은 법이거든요. 그러면 소급 시점이 굉장히 기간이 당겨져 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고요.

지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산단에 대한 문제만 일단 범위를 좁혀서 하게 되면 물류단지하고 그다음에 관광단지 부분은 소급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산단을 해 줄기 때문에 산단 시점으로 물류단지나 관광단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급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어떤 시점이 해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산단 측면을 오늘 의결하시게 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까지 좋은 영향을 미쳐서 법안이 정리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부처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사실은 이 법안이 11월 말쯤에 갑자기 왔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여력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갑자기 병합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수석님 말씀처럼 신탁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담보신탁에 한정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마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위원님들 계속 말씀 중에 어쨌든 개발자·공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어야 되는지 상당히 이를 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전형적인 개발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성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보고 세율 또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조승환 위원** 저는 계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계류, 다른 위원님?

○**박정현 위원** 계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계류를 하되 오늘 나온 의견들 중에서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행안부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 다른 단지들까지 확대하지 말고.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확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종의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게 가능하다면 부대의견으로 내년 2월이든 3월이든 산업단지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제출해서 처리……

○**위성곤 위원** 2월 말까지로 하지요. 빨리해서……

○**소위원장 윤건영** 2월 말까지,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달희 위원** 날짜 지정해서 하시지요.

○**조승환 위원** 저는 할 수 있는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입니다만 빤히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저당을 해 가지고서 하면 자기 명의로 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취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이 되고 이걸 신탁 방식으로 가서 돈을 빌려 오게 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은 사업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이 사람들이 신탁 쪽으로 갔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자기네들의 판단이 있는 거지요, 저도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렌트할 때 개인이 소유하는 방법도 있고 장기 렌트하는 방법도 있고 리스해 가지고 명의는 자기 것으로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장기 대출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차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도 단위는 차 렌트하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위성곤 위원** 이건 감면을 해 주는데 감면을 해 주는 방식이 저당을 하는 방식이냐 신탁을 하는 방식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감면이 되고 어떤 것은 감면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같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조승환 위원** 아니,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뭔가는 저는 개발사업을 안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예를 든 게 제가 지금 차 렌트하는 걸 여기 다 알 수 있게, 그래서 자기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취득세 감면을 못 받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담보를 해서 당기는 것보다

개발 신탁을 해서 당기는 게 금액이 더 많다든지 그런 이유가 다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이게 방식이 같기 때문에 실제 혜택이 어떠냐…… 지금 다 똑같잖아요. 차 빌려서 쓴다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 그 고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사업 시행자가 그것을 알면서, 취득세 감면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으로 해서 돈을 빌려 오고 그걸 분양가에 자기네들이 반영을 해서 그 수익을 확보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상당수 지금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자자체별로……

○**조승환 위원** 그건 모르고 했다라는 거지. 그것 몇백억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자자체별로 지금 상황이 일관성이 있느냐도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조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 다 최소 몇백억 단위에서 투자를 하면서 돈을 당겨 오는 걸 갖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PF를 조성할 거냐 대출을 받을 거냐 신탁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그것을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법에서, 입법기관에서 빨리 정해 줘야, 이걸 빨리 정해 줘야……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그것도 빨리 정해 주는 것이지, 사실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만약 이걸 안 한다고 결정을 하시려면 지금 오늘 아예 안 한다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시장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조승환 위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논의 안 했던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이달희 위원** 2월 말까지 한시적인 시간을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부대의견으로 2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 앞서 의논됐던 검토,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분만 정회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논의는 다 끝났고요. 지금 실무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 10분만 정회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3시 35분입니다. 4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는 모두 끝났고 지방교부세법과 부대의견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들 지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1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해서 1호와 2호에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지금 법정화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승환 위원** 75 대 25는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양부남 위원** 그거 100분의 40과 100분의 5가 그 의미입니다.

○**조승환 위원** 그 의미입니까?

○**양부남 위원** 예, 그게 포함된 겁니다. 20에 75가 15가 돼 가지고 그래서 40 이상, 5 이하가 되는 거지요.

○**조승환 위원** 산수가 약해서……

○**배준영 위원** 아까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넣기가 조금……

지금 100분의 15로 이렇게 가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75가 100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15로 하는 바람에 90까지밖에 못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 취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해서……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상, 이하가 그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상, 이하가 그 의미예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조승환 위원** 융통성을 주고 있다라고, 그건 맞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어쨌든 극단적으로는 100%가 가능하고 100 대 0이 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조문으로는. 그리고 어쨌든 시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하여튼 지나간 건 다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 추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먼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서울시의 적극 협조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방세법 관련해서 2의 가는 고급주택에 대한 것을 이제 연구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개월 수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6개월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나 번에는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6개월 이내에 보고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고받으면 하반기에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서울시 등과 협의해서 마련하는 안이 되겠고요.

‘나’의 두 번째는 서민주택 그 기준에 관련해서 이것도 한 6개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 번에 이제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 부처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해서 이것도 역시 6개월 이내에 보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라’가 중고자동차 사업 진출 같은 경우에 대기업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6개월 정도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마 번인데요. 이건 이제 담보신탁 등 소유권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소급 여부인데요. 이건 실태조사 해 봄아 소급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소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소급 시점은 2025년 1월 1일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 정부정책 발표일 1월 10일 이런 식으로 소급을 해서 소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소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 소급 시점이 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지막에 마 번, 행안부는 2025년 2월이 아니라 5월 중으로 하겠습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2월까지는 도저히 어렵다라고 해서 5월 중으로 하고요.

혹시 부대의견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김성기** 위원장님 세제국장 한 말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의견 중의 두 번째, 나 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 6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해서 환경부를 넣어 주시면 저희가 환경부랑 업무를 협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끝났지요?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9항, 제21항, 제25항, 제28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1항까지,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 제47항부터 제48항까지, 제50항부터 제69항까지, 제72항부터 제82항까지, 제84항부터 제87항까지, 제93항부터 제96항까지, 제98항부터 제99항까지, 제101항부터 제102항까지, 제105항부터 제106항까지, 제110항부터 제120항까지, 이상 6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부터 제131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되지 못한 다른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방세 관계법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흘간 계속된 법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고 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성희 박정현 배준영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달희 조승환 한병도

○청가 위원(1인)

정춘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지방세제국장 김성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현정

소방청

기획조정관 배덕곤